

## ●법무부령 제10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6월 25일

법무부장관 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전자감독 및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을 “전자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의2제2항 중 “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인권조사과 및 여성아동인권과”를 “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인권조사과·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로 보한다”를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 관리·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10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제2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호의2”를 “제5호(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3 중 “출입국사범”을 “입국심사 업무 관련 출입국사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제9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9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제33조제9항제3호 전단 중 “보호직 1명(6급 1명)”을 “약무직 3명(6급 1명, 7급 2명), 보호직 1명(6급 1명)”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86”을 “795”로 하고, 일반직 계 “745”를 “75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8”을 “29”로, 검찰주사 “35”를 “36”으로 하고,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다음에 “직업상담주사 1”을 신설하며, 검찰주

사보 “11” 을 “12” 로 하고, 보호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을 신설하고, “행정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4” 를 “5” 로,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0” 을 “11” 로, 운전서기보 “9” 를 “10” 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5” 를 “23” 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 를 “6” 으로 하며, 경감 1 다음에 “경위 1” 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경사 1” 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86” 을 “795” 로 하고, 일반직 계 “745” 를 “752” 로 하며,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 을 “2” 로, 서기관 또는 교정관 “3” 을 “4” 로, 교정관 “24” 를 “23” 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8” 을 “29” 로, 검찰주사 “35” 를 “36” 으로 하고,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다음에 “직업상담주사 1” 을 신설하며, 검찰주사보 “11” 을 “12” 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을 신설하고, “행정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4” 를 “5” 로,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0” 을 “11” 로, 운전서기보 “9” 를 “10” 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5” 를 “23” 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 를 “6” 으로 하며, 경감 1 다음에 “경위 1” 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경사 1” 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보 “89” 를 “90” 으로, 열관리운영서기보 “3” 을 “2” 로 한다.

별표 7의2 중 공업서기보 “89” 를 “90” 으로, 열관리운영서기보 “3” 을 “2” 로 한다.

별표 9 중 보호서기보 “171” 을 “172” 로, 공업서기보 “17” 을 “19” 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1” 을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5” 를 “4” 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 을 삭제한다.

별표 12 출입국관리주사보 714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보 1” 을 삭제하며, 출입국관리서기보 “528” 을 “529” 로, 방호서기보 “6” 을 “5” 로 한다.

별표 12의2 출입국관리주사보 714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보 1” 을 삭제하며, 출입국관리서기보 “528” 을 “529” 로, 방호서기보 “6” 을 “5” 로 한다.

별표 1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명 (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법무실 송무심의관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5년 3월 31일까지
3)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9명	2027년 3월 31일까지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4) 국제법무국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6년 6월 30일까지
5)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3명 (3·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6)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6명 (4급·검사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6월 30일까지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심의과	2명 (5급 2명)	2024년 9월 30일까지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중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7조제1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전자감독과장이”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교정관 1명)으로 본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경위 1명, 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93호, 2024. 6.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9급 6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